

영 등 포 구 의 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2004.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 입니다.

김영진 의원외 16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
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민족문화
장달 취지에 따라 우리구의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의 진흥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조례 제1조(목적)의 규정중 “다양한 문화예술”다음에 (“전통
문화예술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2조(정의)에 “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라는 6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검토 의견

○ 우리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면 영등포3동의 상산전제, 당산2동의 당산동 부군당제, 신길2동의 방학곳지 부군당제, 신길3동의 도당제가 있으며 세시풍속으로는 양평1동의 정월대보름, 쥐불 놀이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적게는 150명에서부터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구의 전통문화를 보호·계승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4. 3. 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종전 20~400만원의 소액의 예산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소개하면

제112조 제1항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부행위는 동법 제11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우리구의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이 위축될 위기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발의된 안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구의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을 진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인다면 별표1의 ‘교육과목, 공연발표전시’ 란의 과목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2004. 12. 9

보고자 : 김찬재

전통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현황

구 분	명 칭	시행시기	참 여 주민수	예산지원 (예정액)	참여동
전통문화유산	상산전제	음력10월1일	150명	50만원	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제	상동	200명	상동	당산2동
	방학곳지부군당제	상동	200명	상동	신길2동
	도당제	음력1월15일 (정월대보름)	200명	상동	신길3동
세시풍속	쥐불놀이	음력1월15일 (정월대보름)	3,000명	400만원	양평1동
		- 이 하	빈 칸 -		